

허리 디스크 시술 후 감염 발생에 따른 배상액

글_김경례 팀장(한국소비자원 의료·금융팀, 법학박사)



신경성형술 후 추간판염이 발생했는데 손해배상액은?

신청인(남, 30대)은 외상없이 갑자기 허리통증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개월 동안 3차례 수핵 및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에 추간판염으로 진단받았다. 그로부터 보름 후에 다른 병원에서 척추유합술을 시술받고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하였는데, 의사의 책임과 배상액은 어느 정도일까?



보존적 치료를 생략하고 시술한 점, 시술 후에 발생한 감염에 대한 책임

추간판은 수핵(젤라틴 성분의 조직)과 섬유륜(섬유테, 추간판 외부를 양파껍질처럼 원형으로 동글게 싸고 있는 섬유조직)으로 되어 있다. 추간판은 척추 뼈 사이에 있는 관절연골로 척추의 움직임과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작용을 한다.

외상이나 퇴행성변화에 의해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파열되면 안에 있던 수핵이 밖으로 튀어나와 주위 조직(특히 척수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해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을 일으킨다. 이러한 통증, 요통 및 주변 부위로 통증이 퍼지는 방사통은 대부분 시간이 경과하면 저절로 좋아진다. 이는 서서히 염증반응이 없어지고 수핵의 수분이 감소되어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본 건의 경우도 외상없이 갑자기 발생한 통증이기 때문에 보존적인 치료나 안정, 소염진통제 복용 등을 6~12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원칙이다. 수핵성형술이나 신경성형술은 수술에 준하는 위험성(침습적 치료)이 있기 때문에 시술 전 증상의 재발이나 감염 발생, 수술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보존적 치료를 생략하고 침습적인 시술 전에 위험성, 효과 등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세 차례나 시술을 한 점, 마지막 시술 후 염증반응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면 시술은 염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시술에 따른 의사의 책임(설명미흡 및 주의소홀)이 인정돼, 시술비용(약 900만 원)의 60%와 위자료 200만 원, 총 720만 원에 합의했다.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이란?

- 변성된 추간판(디스크)에 과도한 외력이 가해지면서 추간판이 돌출되는 것으로 나이가 들수록 돌출 빈도가 높아지는 노화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추간판 높이가 감소되어 신경근이 이완되어 신경근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되고, 수핵이 신경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신경근 길이가 길어지는 생체 특성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척추 수술은 보존적인 치료를 한 이후 마지막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